

2023년 7월 1일부터, 16세 이상은 운전면허증 없이 특정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

※ 16세 미만은 운전금지

원동기장치자전거

면허필요

일반원동기장치자전거
(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)

법정 속도 30 km/h

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교통 규칙이 적용됩니다.

면허불필요

특정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

- 차체 크기는 전장 190cm, 전폭 60cm 이하인 것
- 최고시속이 20 km/h 이하로 설정되어 있을 것
- 주행중에 최고속도 설정을 변경할 수 없을 것
- 전기를 동력으로 할 것
- AT 기구가 구비되어 있을 것
- 최고 속도 표시등이나 워커 등이 구비되어 있고 보안기준에 적합하을 것
- 번호판을 부착할 것
-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
- 안전모를 착용할 것 (노력 의무)

최고속도표시등이 **녹색으로 점멸**

모드 전환



특례특정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

- 최고시속이 6 km/h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것
- 최고속도표시등이 **녹색으로 점멸**하는 것

운전하기 전에 어떤 차량 구분인지 확인하십시오!! 차량구분에 따라 규칙이 달라집니다!
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이지만 차량구분에 따라 최고 속도가 다르거나 통행할 수 있는 장소도 다릅니다!



특정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와 특례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방법

차도 주행이 원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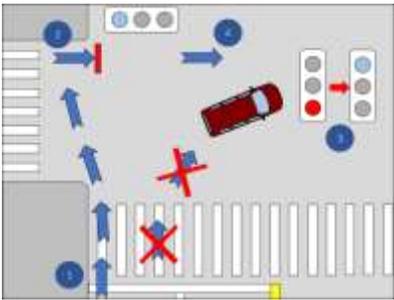
보도 또는 노숙대 (보행자 통로) 와 차도를 구분하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주행해야 합니다. 도로에서는 좌측을 주행하며, 특히 차량주행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왼쪽 끝에서 주행해야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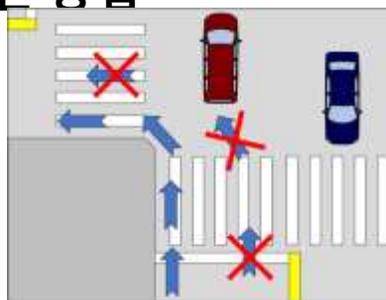
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.

차량주행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장 왼쪽 차량주행로를 주행해야 합니다.

우좌회전 방법



우회전할 때는 이른바 「2단계 우회전」을 해야 합니다. ※ 신호등이 청색이되면 교차로 건너편까지 직진하고 그 지점에서 멈춰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전방 신호가 청색이 되면 진행하십시오.



좌회전할 때는 미리 워커로 좌회전신호를 보내고 가능한 한 왼쪽 끝을 따라 충분히 속도를 줄이십시오.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 해서 돌아야 합니다.

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

특례특정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하여 보도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. 단, 주행할 수 있는 보도는 「보통자전거 등 및 보행자 전용」 도로표지판이 설치된 보도에 한합니다. 보도를 주행할 때는 보도 중심에서 차도 쪽 또는 보통자전거주행지정 부분을 주행해야 합니다.

보도를 주행할 때는 보행자 우선!!



나라헌경찰

